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4
----------	-----

2015. 4. 30.(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4월 21일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조병욱)

가. 제안이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인·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허가 의제 협의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5.1.12. ~ '15.1.3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없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지만,
- 안 제20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충청북도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재원 조성과 향후 특별회계의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

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

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영 제4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18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 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0조의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공청회의 시기, 개최 절차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인·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57조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66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건축·세무·민원 등 인가·허가 업무
9.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

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청회)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

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법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3.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국방·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전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심의 안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허가 등의 업

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비용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심의 등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 수당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수당

3. 관련조문

- 안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6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8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공청회 비용,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수당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공청회 비용 : 연 2회 개최(개발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수당 : 연 4회 개최, 위원 18명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수당 : 연 4회 개최, 위원 5명

다. 추계 결과 : '1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5,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 출	55,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공청회 비용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위원회 수당	36,000	7,200	7,200	7,200	7,200	7,200
전문위원 수당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연간 소요경비 : 11,000천원(공청회 1,800 위원회 수당 7,200 전문위원 2,000)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장 이태훈